|  |  |  |
| --- | --- | --- |
|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1998년 1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3호로 발표되었으며, 2017년 7월 16일 <국무원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오염 발생과 생태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제3조 오염이 발생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함에 있어 반드시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국가표준 및 지방(地方)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를 실시하는 구역 내에서 건설하는 경우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 요구도 만족시켜야 한다.  제4조 공업 건설 프로젝트는 에너지•자재 소모가 적고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청결생산 공법을 사용하고 자연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과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개축•증축 프로젝트와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존의 환경오염과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6조 국가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제7조 국가는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를 분류하여 환경보호 관리를 시행한다.  (1)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 프로젝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상세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에 가벼운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 건설 프로젝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 또는 특별평가(專項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환경에 대한 영향이 아주 경미한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전문가 논증 절차와 관련 부서, 업계협회, 기업•사업기관, 대중을 향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8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 개황;  (2) 건설 프로젝트 주변의 환경 현황;  (3)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예측;  (4) 환경보호 조치와 그의 경제성•기술성에 대한 논증;  (5) 환경영향의 경제손익에 대한 분석;  (6)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건의사항;  (7)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 환경영향등기표의 내용과 양식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9조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심사비준권한을 보유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심사비준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심사비준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에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심사비준함에 있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적합성, 환경영향 분석•예측•평가의 신뢰성, 환경보호 조치의 유효성, 환경영향평가 결론의 과학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술기구에 의뢰하여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부담한다. 기술기구는 그가 발행한 기술평가 의견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건설업체,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로부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등기표를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현(縣)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온라인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시비준•비안(備案) 업무를 처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다음 각 호의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심사비준 업무를 담당한다.  (1) 핵시설, 극비공사 등 특수 성격의 건설 프로젝트;  (2)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성(省)•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에 걸친 건설 프로젝트;  (3)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련 부서가 심사비준하는 건설 프로젝트.  전 항에 규정한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한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은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이 기타 행정구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관련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보고표는 공동 직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심사비준한다.  제11조 건설 프로젝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비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유형 및 입지선정, 배치, 규모 등이 환경보호 법률•법규 및 관련 법정(法定) 규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건설 프로젝트 소재 지역의 환경 품질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품질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건설 프로젝트가 취하고자 하는 조치로는 해당 지역의 환경 품질 개선 목표 관리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3) 건설 프로젝트가 취하고자 하는 오염방지 조치로는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배출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거나 생태환경 파괴를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4) 개축, 증축 및 기술개조 프로젝트로서 기존의 환경오염과 파괴된 생태환경의 복구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며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5)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의 기초 자료와 데이터가 현저히 부실하고 그 내용에 중대한 결함 또는 누락이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결론의 명확성•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제12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가 비준을 득한 후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장소, 생산공법 또는 오염 방지 조치, 생태환경 파괴 방지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다시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가 비준을 득한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는 원(原) 심사비준 부서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原) 심사비준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사 의견을 서면으로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심사비준과 환경영향등기표의 비안(備案)에 대하여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건설업체는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건설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어떠한 행정기관도 환경영형평가 전문업체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건설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 작성 시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소재지 유관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호시설의 건설  제15조 건설 프로젝트에 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주요 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사용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설 프로젝트의 초보설계에는 환경보호 설계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에 관한 장(章)을 두어 환경오염 방지 조치, 생태환경 복구 조치 및 환경보호시설 투자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건설업체는 환경보호시설 건설을 시공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환경보호시설 건설 진도와 건설 자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건설과 동시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및 그 심사비준부서가 심사비준 결정 시 제시한 환경보호 대책•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한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대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시설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시설의 건설 상황과 시험•조정 상황을 사실대로 검사,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허위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체는 법에 따라 검수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단계별로 건설하고 단계별로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환경보호시설도 단계별로 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한 건설 프로젝트는 부대 환경보호시설이 검수를 통과한 후에야 생산 또는 사용 투입이 가능하며 검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전 항에 규정한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된 후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후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시설의 설계, 시공, 검수, 생산 또는 사용 투입 상황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류에 의해 확정된 기타 환경보호 조치의 실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위법 정보를 사회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하며 위법자 명단을 사회에 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1조 건설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비준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무단 착공한 경우;  (2)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재심사 승인 없이 무단 착공한 경우;  (3)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등기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건설업체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건설 프로젝트 초보설계 작성 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복구 조치와 환경보호시설 투자예산을 확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환경보호시설을 시공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따라 환경영향 후속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건설업체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프로젝트 건설과 동시에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와 그 심사비준부서가 심시비준 결정 시 제시한 환경보호 대책•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 중지를 명한다.  제23조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부대 환경보호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대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대 환경보호시설이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거나, 환경보호시설 검수 과정에서 허위 조작 행위를 행한 경우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담당자와 기타 책임자에게는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한 경우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폐쇄를 명한다.  건설업체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법에 따라 환경보호시설 검수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현(縣)급 이상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공개할 것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사실을 공고한다.  제24조 기술기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건설업체,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경우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수취한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수취한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5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업무 과정에서 허위 조작 행위를 행한 경우 현(縣)급 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수취한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6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업무인력이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장 부칙  제27조 유역 개발, 개발단지 건설, 신도시 개발, 낡은 도시구역 개조 등 지역적인 개발 사업은 건설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세한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별도 제정한다.  제28조 해양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해양공사 환경보호 관리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군사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1998年1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3号发布；根据2017年7月16日《国务院关于修改〈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的决定》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防止建设项目产生新的污染、破坏生态环境，制定本条例。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建设对环境有影响的建设项目，适用本条例。  第三条　建设产生污染的建设项目，必须遵守污染物排放的国家标准和地方标准；在实施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的区域内，还必须符合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的要求。  第四条　工业建设项目应当采用能耗物耗小、污染物产生量少的清洁生产工艺，合理利用自然资源，防止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五条　改建、扩建项目和技术改造项目必须采取措施，治理与该项目有关的原有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二章　环境影响评价  第六条　国家实行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制度。  第七条　国家根据建设项目对环境的影响程度，按照下列规定对建设项目的环境保护实行分类管理：  （一）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重大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对建设项目产生的污染和对环境的影响进行全面、详细的评价；  （二）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轻度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表，对建设项目产生的污染和对环境的影响进行分析或者专项评价；  （三）建设项目对环境影响很小，不需要进行环境影响评价的，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在组织专家进行论证和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事业单位、公众等意见的基础上制定并公布。  第八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应当包括下列内容：  （一）建设项目概况；  （二）建设项目周围环境现状；  （三）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影响的分析和预测；  （四）环境保护措施及其经济、技术论证；  （五）环境影响经济损益分析；  （六）对建设项目实施环境监测的建议；  （七）环境影响评价结论。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表、环境影响登记表的内容和格式，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  第九条　依法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在开工建设前将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报有审批权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未依法经审批部门审查或者审查后未予批准的，建设单位不得开工建设。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应当重点审查建设项目的环境可行性、环境影响分析预测评估的可靠性、环境保护措施的有效性、环境影响评价结论的科学性等，并分别自收到环境影响报告书之日起60日内、收到环境影响报告表之日起30日内，作出审批决定并书面通知建设单位。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可以组织技术机构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进行技术评估，并承担相应费用；技术机构应当对其提出的技术评估意见负责，不得向建设单位、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收取任何费用。  依法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将环境影响登记表报建设项目所在地县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备案。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开展环境影响评价文件网上审批、备案和信息公开。  第十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负责审批下列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  （一）核设施、绝密工程等特殊性质的建设项目；  （二）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建设项目；  （三）国务院审批的或者国务院授权有关部门审批的建设项目。  前款规定以外的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审批权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建设项目造成跨行政区域环境影响，有关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环境影响评价结论有争议的，其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由共同上一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  第十一条　建设项目有下列情形之一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作出不予批准的决定：  （一）建设项目类型及其选址、布局、规模等不符合环境保护法律法规和相关法定规划；  （二）所在区域环境质量未达到国家或者地方环境质量标准，且建设项目拟采取的措施不能满足区域环境质量改善目标管理要求；  （三）建设项目采取的污染防治措施无法确保污染物排放达到国家和地方排放标准，或者未采取必要措施预防和控制生态破坏；  （四）改建、扩建和技术改造项目，未针对项目原有环境污染和生态破坏提出有效防治措施；  （五）建设项目的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基础资料数据明显不实，内容存在重大缺陷、遗漏，或者环境影响评价结论不明确、不合理。  第十二条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经批准后，建设项目的性质、规模、地点、采用的生产工艺或者防治污染、防止生态破坏的措施发生重大变动的，建设单位应当重新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自批准之日起满5年，建设项目方开工建设的，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应当报原审批部门重新审核。原审批部门应当自收到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之日起10日内，将审核意见书面通知建设单位；逾期未通知的，视为审核同意。  审核、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备案环境影响登记表，不得收取任何费用。  第十三条　建设单位可以采取公开招标的方式，选择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对建设项目进行环境影响评价。  任何行政机关不得为建设单位指定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进行环境影响评价。  第十四条　建设单位编制环境影响报告书，应当依照有关法律规定，征求建设项目所在地有关单位和居民的意见。  第三章　环境保护设施建设  第十五条　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产使用。  第十六条　建设项目的初步设计，应当按照环境保护设计规范的要求，编制环境保护篇章，落实防治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措施以及环境保护设施投资概算。  建设单位应当将环境保护设施建设纳入施工合同，保证环境保护设施建设进度和资金，并在项目建设过程中同时组织实施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其审批部门审批决定中提出的环境保护对策措施。  第十七条　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竣工后，建设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的标准和程序，对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进行验收，编制验收报告。  建设单位在环境保护设施验收过程中，应当如实查验、监测、记载建设项目环境保护设施的建设和调试情况，不得弄虚作假。  除按照国家规定需要保密的情形外，建设单位应当依法向社会公开验收报告。  第十八条　分期建设、分期投入生产或者使用的建设项目，其相应的环境保护设施应当分期验收。  第十九条　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其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经验收合格，方可投入生产或者使用；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投入生产或者使用。  前款规定的建设项目投入生产或者使用后，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开展环境影响后评价。  第二十条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建设项目环境保护设施设计、施工、验收、投入生产或者使用情况，以及有关环境影响评价文件确定的其他环境保护措施的落实情况，进行监督检查。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将建设项目有关环境违法信息记入社会诚信档案，及时向社会公开违法者名单。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一条　建设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的规定处罚：  （一）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未依法报批或者报请重新审核，擅自开工建设；  （二）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未经批准或者重新审核同意，擅自开工建设；  （三）建设项目环境影响登记表未依法备案。  第二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编制建设项目初步设计未落实防治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措施以及环境保护设施投资概算，未将环境保护设施建设纳入施工合同，或者未依法开展环境影响后评价的，由建设项目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在项目建设过程中未同时组织实施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其审批部门审批决定中提出的环境保护对策措施的，由建设项目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建设。  第二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未建成、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建设项目即投入生产或者使用，或者在环境保护设施验收中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10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环境污染或者生态破坏的，责令停止生产或者使用，或者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关闭。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未依法向社会公开环境保护设施验收报告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公开，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第二十四条　违反本条例规定，技术机构向建设单位、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收取费用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退还所收费用，处所收费用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第二十五条　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在环境影响评价工作中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处所收费用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第二十六条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七条　流域开发、开发区建设、城市新区建设和旧区改建等区域性开发，编制建设规划时，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另行规定。  第二十八条　海洋工程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按照国务院关于海洋工程环境保护管理的规定执行。  第二十九条　军事设施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第三十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